

Chapter 4. PR INSIGHT II

양재규의 Law119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반론권 상실?

완결성 있는 기사가 되려면 당사자의 입장 내지 반론을 담아야 한다. 물론 이 사실조차 모르는 기자들도 있는 듯하다. 나아가, 당사자 목소리에 경청하는 기사보다 그저 구색 맞추기 용도의 반론이 부지기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글 |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A photograph of a desk setup. In the foreground, a pair of glasses is on the left. A silver pen lies horizontally across a document. The document has the words "right of reply" printed in a large, bold, serif font. To the right, a portion of a calculator is visible, showing buttons for "CE/C", "C", and "00".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 green plant on the left and a wooden desk surface.

right of reply

Q

밤 10시를 전후한 시간에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언론사 소속 기자의 전화였다. 한밤 중에,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못 받았을 뿐인데 황당하게도 기사 본문에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아 반론을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다. 기자에게 항의를 하니 되레 전화했는데 안 받지 않았냐며 역정을 낸다. 반론권 보장은 언론의 의무가 아닌지, 한밤 중에 전화 한 번 한 것으로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반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A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법적 의무다. 동시에 보도윤리이기도 할 것이나 윤리라는 말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 엄중한 법적 의무를 보도윤리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 된다.

반론보도를 언론사의 재량이나 시혜쯤으로 여기는 기자들도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틀린 생각이다(이전 기사 참조: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의무' 2023.8.7.). 이런 생각을 하는 기자들에게는 언론중재법 제16조를 읽어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도 당사자는 자신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 시 언론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나 위법성 유무는 따지지도 않는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지만 반론보도청구권 역시 적극적인 행사가 중요하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가 알아서 반론 실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식으로 반론보도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두 가지 점에서 특히 그러한데 일단 반론보도청구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다. 보도를 안 날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면 행사하지 못한다. 대언론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우물쭈물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뒤늦

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보면 기간이 도과되어 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또 언론사의 구체적인 보도의무가 정식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른바 '기한 없는 채무'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행의 시점을 지정, 촉구해야만 상대방에게도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론보도가 언론의 의무임을 전제로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즉 반론권의 소멸 내지 상실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와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할 경우다. 반론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권리 포기나 권리 남용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먼저 권리 포기 여부다. 판례는 방송사의 정식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인터뷰는 피청구인(방송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더라도 과연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반론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2007카합1833). 취재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물며 한밤중에 걸려온
기자의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해서 반론권
을 포기했다고 볼 리 없다. 전화 몇 통 못 받은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권리 남용 여부다. 권리 남용은 민
법의 맨 앞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권리남용의 원칙을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매우 엄
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판례는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
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
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87다카2699).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오직 상
대방에게 고통만 주려고 하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끝으로 반론권의 포기든 남용이든 권리가 소
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에 앞서 반론
의 기회가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자들 중에는 흥
보담당자에게 전화 몇 통 한 것을 두고 반론
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적지 않다. 이것은 반론 기회의 실질적 보
장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몇 번을, 어떻게 접
촉해야 반론권의 실질적 보장에 해당하는지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전화, 이메일, 카톡, 문자메시
지 등 통신 수단이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번 접촉하지 않
으면 반론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반론권 보장은 방법이나 수단의 문제
이기 전에 취재원의 반론까지 확인하여 실제
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자의 진정성과
연관된 문제일 것이다.



필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
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
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